

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9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 및 해지,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여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여 하남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,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의 의무 신설(안 제15조의2)
- 나.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세부내용 신설(안 제17조의2)
- 다.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의 손해배상 내용 신설(안 제17조의3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3. 10. ~ 2023. 3. 30. [21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개선권고 반영

- 제13조제3항 :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교육 실시 시 지역여건을

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명시 권고

- 제17조의3 : 손해배상 관련 귀책사유 없음 입증하는 경우 책임면제

명시 권고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

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,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제3항을 따른다.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
2. 보육전문가
3. 관계 공무원
4. 어린이집의 원장
5. 보육교사 대표

제5조제2항 중 “잔여임기”를 “남은 기간으”로 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공립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

실시해야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연장계약” 을 “재계약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장에 제15조의2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·수탁 계약서에 따른다.

제17조의2(위탁의 취소 및 해지)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 -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손해배상)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. 다만, 수탁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여성보육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여성보육과장 김 교 성
	팀장 직위 · 성명	보육정책팀장 장 보 배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장 보 배 (790-544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(互選)</u>하며, 위원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제3항에 따라 <u>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호선(互選)</u>한다.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,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제3항을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</u> 2. <u>보육전문가</u> 3. <u>관계 공무원</u> 4. <u>어린이집의 원장</u> 5. <u>보육교사 대표</u>
<p>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</u></p>	<p>제5조 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15조 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,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·③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 남은 기간-----

-----.

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공립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15조 (위탁계약) ① -----

-----, 재계약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

<신 설>

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
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
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
며,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
다.

제15조의2(수탁자의 의무) ① 수
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
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
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
다.

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
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
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
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
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
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
계인수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
않은 사항은 위·수탁 계약서에
따른다.

<신 설>

제17조의2(위탁의 취소 및 해지)

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
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

2.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
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손해배상)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
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
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. 다만,
수탁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
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
다.